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7.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19. 5. 14.에 발표한 「국민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버스분야 발전방안」의 이행을 위하여 일반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고, 국가사무인 광역급행형 시내버스를 포함하여 준공영제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간 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한정면허의 운임·요금 결정 방법 변경(안 제7조제1항)

운임·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한정면허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 안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운행형태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함.

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대상 범위 명확화(안 제21조의6)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행정구역에서 안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운행형태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위임사무 조정(안 제37조)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기점으로 운행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면허, 휴업·폐업 등에 대한 권한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국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조정함.

다. 면허취소 등에 관한 처분관할관청 변경(안 제42조)

안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운행형태의 시내버스 운송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면허취소 등에 관한 처분을 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경기도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을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운행형태의)”로 한다.

제2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6(재정 지원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범위) 법 제50조제2

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운행형태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제한한다)의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기점으로 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제37조제2항제1호 중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을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운행형태의”로, “고속형”을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고속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광역급행형)을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운행형태의”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을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운행형태의”로, “고속형”을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고속형”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을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운행형태의”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광역급행형”을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운행형태”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광역급행형”을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운행형태의”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을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운행형태의”로, “고속형”을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고속형”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을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운행형태의”로, “고속형”을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고속형”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을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운행형태의”로, “고속형”을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고속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을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운행형태의”로, “고속형”을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고속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및”을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운행형태의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단서 중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을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운행형태의”로, “고속형”을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고속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 중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을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운행형태의”로, “고속형”을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고속형”으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및 고속형”을 “고속형”으로,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시외버스운송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 중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운행형태의 시내버스운송사업에 대하여 제2항제2호·제6호·제6의2호·제11호·제1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으면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제1항 단서 중 “광역급행형인)을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운행형태의”로, “고속형”을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고속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적용특례)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면허한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을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7조제2항 각 호의 권한과 관련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운임·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7조(운임·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 ----- ----- ----- --.
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제외한다)를 받은 자	1. ----- -----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운행형태의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신설>	제21조의6(재정 지원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범위) 법 제5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용자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운행형태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제한한다)의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

	<u>치단체의 행정구역에서 여객자 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포함한다.</u>		
제37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 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도 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 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제37조(권한의 위임) ① ----- ----- ----- ----- ----- -----.	운송사업(운행형태가 광역급 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면허	----- <u>(제1항제1호 각 목 외 의 부분에서 규정한 운행형태 의 -----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고속 형-----</u>
1. <u>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 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 한</u>	1. <u>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 사업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 내 둘 이상 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 여 고시하는 지역을 기점으로 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 송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u>	2. (생 략) 3. 법 제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광역급행형 시내버 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 사업은 제외한다)의 운임·요 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2. (현행과 같음) 3. ----- ----- <u>(제1항제1호 각 목 외 의 부분에서 규정한 운행형태 의 ----- -----</u>
가. ~ 머. (생 략) 2. (생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 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가. ~ 머.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 ----- -----.	4. (생 략) 5. 법 제9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운행형태가 광역급 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운송약관 및 그 변경신고의 수리 6.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 획 변경(운행형태가 광역급행 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 우에는 운행시간 변경, 영업소 변경, 정류소 변경, 관할구역 내 기점 또는 종점의 변경을 제외한 운행경로의 변경 및	4. (현행과 같음) 5. ----- ----- <u>(제1항제1호 각 목 외 의 부분에서 규정한 운행형태 의 -----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고속 형-----</u> 6. ----- ----- ----- <u>(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운행형태의 ----- ----- -----</u>

운송부대시설의 변경만 해당하고,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행시간, 영업소, 정류소 및 운송부대시설의 변경만 해당한다)의 인가.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운행 형태를 <u>광역급행형</u>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 나. 시외버스운송사업(고속형은 제외한다)을 <u>광역급행형</u> 시내버스운송사업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 6의2. (생략) 7. 법 제1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u>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u>)의 관리위탁신고의 수리 8. 법 제1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u>운행형태가 광역</u>	----- ----- ----- ----- ----- ----- ----- ----- 가. ----- ---- <u>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운행 형태</u>----- --- 나. ----- ----- <u>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운행형태의</u> ----- --- 6의2. (현행과 같음) 7. ----- -----(<u>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운행 형태의</u> ----- -- <u>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고속형</u>--- 8. ----- -----(<u>제1항제1호 각 목</u>	<u>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u>)의 양도·양수에 대한 신고의 수리 및 인가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의 수리 9. 법 제1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u>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u>)의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10.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u>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u>)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 11. (생략) 12. 법 제23조에 따른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중 둘 이상의 시·도에 관련되는 사업의 운행계통·운행횟수 및 운행대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u>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운행 형태의</u> ----- -- <u>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고속형</u>----- ----- 9. ----- -----(<u>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운행 형태의</u> ----- -- <u>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고속형</u>----- 10. ----- -----(<u>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운행형태의</u> ----- --- <u>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고속형</u>----- 11. (현행과 같음) 12. ----- ----- ----- ----- ----- ----- -----
--	--	---	--

	<u>행형태의 시내버스운송사업에 대하여 제2항제2호·제6호·제6의2호·제11호·제1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으면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제42조(처분관할관청 등) ① 법 제83조와 법 제85조에 따른 처분은 해당 관할 관청(자가용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처분관할관청”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u>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취소 등에 관한 처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한다.</u>	제42조(처분관할관청 등) ① --- ----- ----- ----- ----- ----- ---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운행형태의 -----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고속형-----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연 락 처	(044) 201 - 0000